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장
람	

공 보

제660호 2010. 10. 14. (목)

공 고

- 공고 제2010-6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2

【 안내문 】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 행정정보 → 알림마당 → 북구 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문화홍보과 (☎ 219-7207 행정 72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0 - 6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 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안 제3조~제4조)
- 다.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5조~제7조)
- 라. 임금청구, 임금·임대료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안 8조~제11조)
- 마. 기타, 관공사 관련 기업체 협조 홍보 및 실적 평가, 공개 등에 관한 사항 등(안 12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정보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19-7242, FAX 219-724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